

#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0. 10. 2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17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강남구청장(뉴디자인과)
-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0. 10. 20.)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강남힐링센터(개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힐링센터(개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7조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필요성

- ▶ 강남문화재단은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강남힐링센터(코엑스)를 비롯하여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강남힐링센터(개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가능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 대상 사무 : 강남힐링센터(개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 위탁 범위

- ▶ 강남힐링센터(개포) 건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전반
- ▶ 강남힐링센터(개포) 건축, 전기, 기계실, 미화, 방호, 방화 등 시설관리
- ▶ 강남힐링센터(개포) 시설장비 소규모 유지보수 및 물품관리
- ▶ 강남힐링센터(개포) 수익 시설 사용·수익·대관 관리
- ▶ 강남힐링센터(개포)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 ▶ 그 밖에 강남힐링센터(개포)로써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 ▶ 대 상 : 강남힐링센터(개포)
-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3길 39(개포동 1281-1)
- ▶ 면 적 : 697.84㎡
- ▶ 완 공 일 : 2021. 3월(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예산 : 604,410천원[구비 100%, 2021년 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총합계	인건비 (5명)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강사비
2021년 예산(안)	604,410	195,504	297,936	110,970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sup>1)</sup>에 따라 강남힐링센터(개포)를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 위탁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sup>2)</sup>에서는 사무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2항에서는 위임이나 위탁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sup>3)</sup>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강남문화재단(출연기관)은 같은 법 제104조제2항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민간위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강남문화재단의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sup>4)</sup> 제21조제1항에서는 ‘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행’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부담 기준(범위·방법·절차 등)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sup>5)</sup>에 따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sup>6)</sup>에 대행 또는 위탁에 따른 명시적인 규정이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바. (생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있는 바 위탁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행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탁기간은 1년 9개월(2021.3.1.~2022.12.31.)로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수탁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은 다년간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 강남힐링센터(코엑스)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강남힐링센터(개포)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적정인원 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 끝.

#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년월일 : 2020. 10.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뉴디자인과

## 1. 제안이유

강남힐링센터(개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힐링센터(개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7조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2) 필요성

- 강남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강남힐링센터(코엑스)를 비롯하여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강남힐링센터(개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가능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1) 위탁 대상 사무 : 강남힐링센터(개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2) 위탁 범위
  - 가) 강남힐링센터(개포) 건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전반
  - 나) 강남힐링센터(개포) 건축, 전기, 기계실, 미화, 방호, 방화 등 시설관리
  - 다) 강남힐링센터(개포) 시설장비 소규모 유지보수 및 물품관리
  - 라) 강남힐링센터(개포) 수익 시설 사용·수익·대관 관리
  - 마) 강남힐링센터(개포)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 바) 강남힐링센터(개포)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 사) 그 밖에 강남힐링센터(개포)로써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 1) 대 상 : 강남힐링센터(개포)
-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3길 39(개포동 1281-1)
- 3) 면 적 : 697.84㎡(지상1층, 대지4471.7㎡)
- 4) 완공일 : 2021. 3월 (예정)

**마. 위탁기간 : 2021. 3 . 1. ~ 2022. 12. 31.(1년 9개월)**

**바. 수탁기간 : 강남문화재단**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위탁예산 : 604,410천원[구비 100%, 2021년 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총합계	인건비 (5명)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강사비
2021년 예산(안)	604,410	195,504	297,936	110,970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7조(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강남힐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③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몸과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육·홍보 등
  - 2. 주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
  - 3. 그 밖에 주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2	강남힐링센터(개포)	강남구 삼성로3길 39 (개포동 1281-1)
3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 제18조(센터의 운영 등)

-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